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843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에 따라 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하여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년도(2024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금액이 1,162백만원에서 1,987백만원으로 825백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 금액이 기존 13백만원에서 68백만원으로 55백만원 증가하였음.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880백만원 증액함에 따라 '재무활동' 금액이 제329회 임시회 의결 대비 674백만원에서 1,499백만원으로 825백만원 증가하여 122.3% 변경되었음.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당 초	2차 변경 (A)	4차 변경안 (B)	증 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2,873,441	7,873,441	8,752,966	879,525	11.2%
세외수입	110,898	110,898	165,762	54,864	49.5%
경상적세외수입	98,177	98,177	98,177	-	-
이자수입	98,177	98,177	98,177	-	-
공공예금이자수입	98,000	98,000	98,000	-	-
기타이자수입	177	177	177	-	-
임시적세외수입	12,721	12,721	67,585	54,864	431.3%
보조금반환수입	12,721	12,721	67,585	54,864	431.3%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443	2,443	4,449	2,006	82.1%
위탁비반환수입	10,278	10,278	63,136	52,858	514.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62,543	7,762,543	8,587,204	824,661	10.6%
보전수입등	1,162,543	1,162,543	1,987,204	824,661	70.9%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1,987,204	824,661	70.9%
예치금회수	1,162,543	1,162,543	1,987,204	824,661	70.9%
내부거래	1,600,000	6,600,000	6,600,000	-	-
예탁금 및 예수금	-	5,000,000	5,000,000	-	-
예수금수입	-	5,000,000	5,000,000	-	-
전입금	1,600,000	1,600,000	1,600,000	-	-
기타회계전입금	1,600,000	1,600,000	1,600,000	-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A)	4차변경안 (B)	증 감 (C=B-A)	증감률 (D=C/A)
합 계	2,873,441	2,873,441	7,873,441	7,873,441	8,752,966	879,525	11.2%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2,136,400	2,196,400	7,196,400	7,251,400	7,251,400	-	-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2,136,400	2,196,400	7,196,400	7,196,400	7,251,400	-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351,600	351,600	351,600	351,600	351,600	-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000	1,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	-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277,000	277,000	277,000	277,000	277,000	-	-
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	472,800	472,800	472,800	472,800	472,800	-	-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 힐링 지원사업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	-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서울정원 조성	-	60,000	60,000	60,000	60,000	-	-
산불 피해지역 희망 장터 운영	-	-	-	55,000	55,000	-	-
재무활동	734,041	674,041	674,041	619,041	1,498,566	879,525 (824,525)	142.1% (122.3%)
내부거래지출	-	-	-	38,576	38,576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	-	-	38,576	38,576	-	-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자상환)	-	-	-	38,576	38,576	-	-
보전지출	734,041	674,041	674,041	580,465	1,459,990	879,525 (785,949)	151.5% (116.6%)
여유자금 예치	734,041	674,041	674,041	580,465	1,459,990	879,525 (785,949)	151.5% (116.6%)
일반예치금	734,041	674,041	674,041	580,465	1,459,990	879,525 (785,949)	151.5% (116.6%)
행정운영경비	3,000	3,000	3,000	3,000	3,000	-	-
기본경비	3,000	3,000	3,000	3,000	3,000	-	-
기금관리비	3,000	3,000	3,000	3,000	3,000	-	-

※ () : 최종 의회 의결액(2차 변경, 제329회 임시회) 대비 증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I. 검토의견¹⁾

- 서울특별시는 지난 '08년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출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을 지출하고자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을 운용한 바, 지난 '24년 7월, 별도 조례를 신설하여²⁾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8억 2,400만원(824,661천원) 증가하고, **보조금반환수입** 5,400만원(54,864천원)을 증액하여 수입계획함에 따라
 - 수입계획과 연동되는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에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 8억 2,400만원(824,525천원)을 지출계획 하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³⁾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당초 지출계획(6억 7,400만원)보다 122.3%, 8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2)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 : 2024. 7.15)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4)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은 지난 4월, 우리 위원회가 다른 기금으로부터 50억원을 차입(예수금)하여 수입계획하는 것임에도 지출계획에는 예수금 이자항목이 누락된 것을 지적함에 따라⁵⁾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계획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자상환)을 편성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제출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에 기재된 **증감 및 증감률**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한 **A(3차변경)**와 시의회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B(4차변경)**를 비교한 것으로 사료되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⁶⁾에는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4월, 제329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변경한 **A(3차변경)**가 아닌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4월, 의결한 **2차변경**과 시의회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B(4차변경)**에 대한 **증감 및 증감률**이 기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5. 4. 3, p.12~13

①의안번호 : 2670, ②제안(시장) : '25. 4. 1, ③의결 : '25. 4. 3

6)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4. 7), p.283

- 기금운용부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열거된 내용이 있음에도 현재 제출된 의안의 형태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안의 심사기간이 한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